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0나2201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0나22017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19가단108978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 임경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권용민, 장민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병진

변론 종결 2021. 11. 18.

판결 선고 2021. 12. 9.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19가단10897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8. 12.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8. 12. 19. 접수 제1120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기현

판사김천수

판사안성민

별지